

<별첨>

중복감사 방지를 위한 감사계획 협의·조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16. 4. 26. 감사원훈령 제51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4조 등에 따라 중복감사를 방지하고 공공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계획 협의·조정 및 중복감사 확인신청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계획의 중복”이란 동일한 연도에 동일한 기관의 동일한 분야에 대하여 2회 이상 실시하는 감사계획을 말한다.
2. “중앙행정기관 등”이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말한다.
3. “감사원 감사 등”이란 감사원이 「감사원법」에 따라 하는 감사, 자체 감사 및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등이 「감사원법」 외의 개별 관계 법령에 따라 하는 감사를 말한다.
4. “관련 감사기구의 장 등”이란 중복감사 확인신청의 대상이 되는 감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감사기구의 장과 해당 감사사항의 대상 기관의 장 등을 말한다.

